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으로 2019년 기준 최저보험료 14,700원이 2020년에 15,17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 변경이 필요한 동시에 향후 반복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지원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 필요

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부과금액 월 15,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 2. 6일 월10,000원에서 월15,000원으로 개정한바 있음)

기존 조례의 월 15,0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상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된 금액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에

향후 반복되는 보험료 인상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고자
“특정금액”이 아닌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월 15,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p> <p>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세대</p> <p>2.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 ----- ----- ----- ----- -----.</p> <p>1. ----- 보 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p> <p>2. (현행과 같음)</p>